

제143회 구의회 임시회

'09. 2. 27 ~ 3. 9



희망을 만드는

2009년도 주요업무계획



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

순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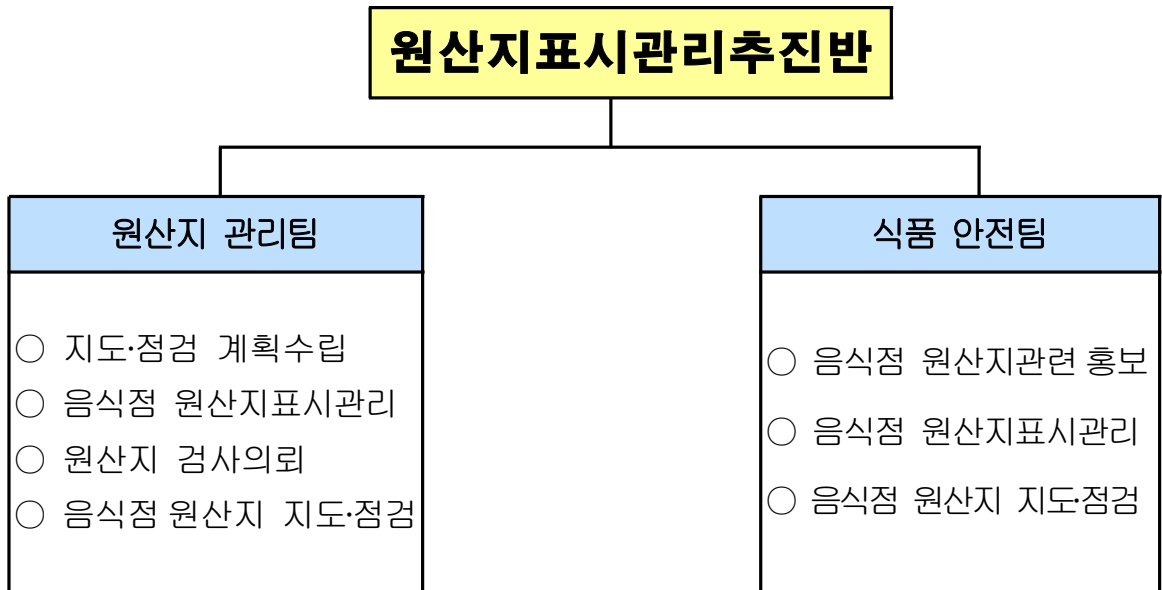
- 일반 현황 1
- 정책목표와 방향 3
- 업무 체계 도 3
-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4
- 2008 주요사업 추진실적 8

I. 일반 현황

1 인 력

구분	계	일반직						기능직		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8급	9급	10급
정원	9		1	2	2	1		2	1	
현원	8			2	2	1		2	1	
과부족	-1		-1							

2 조 직



3**주요시설 및 장비** 장비 현황 : 없음**4****예산 현황** 예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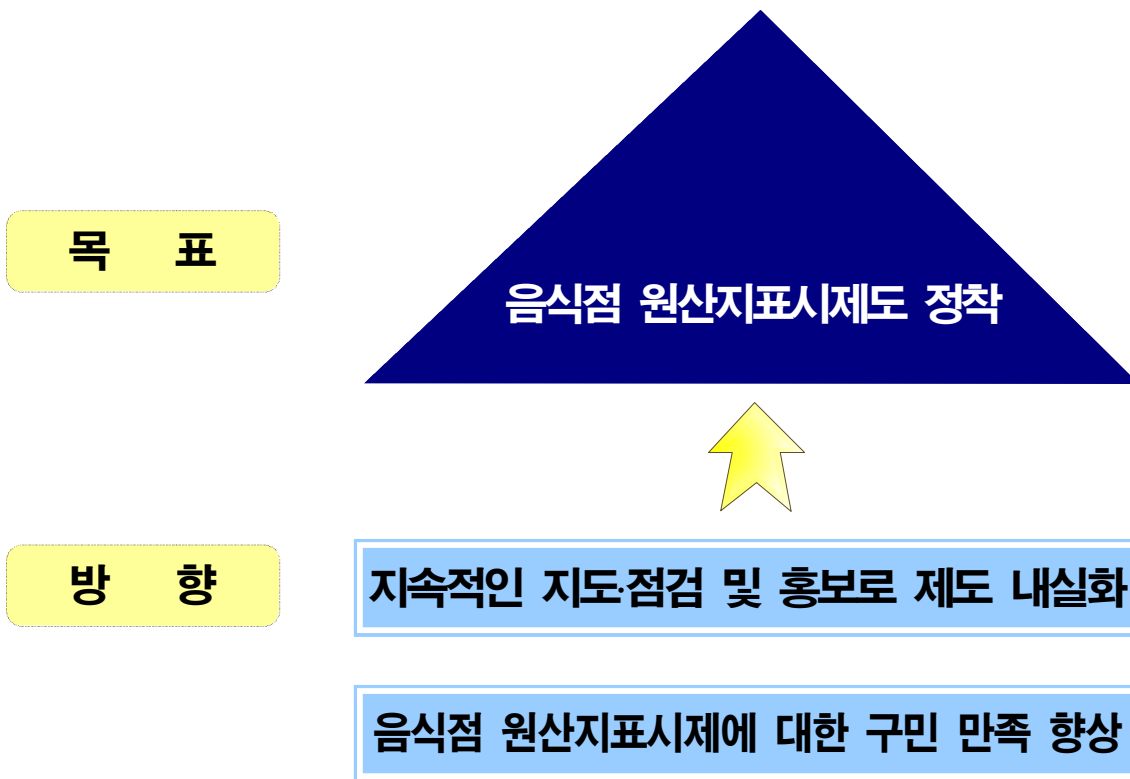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원)

팀 명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(△)감
계	62,885	13,257	49,628
원산지관리팀	55,245	13,257	41,988
식품안전팀	7,640		7,640

 주요 사업예산 현황

예산총액	정책 사업	단 위 사 업	세부사업
62,885천원	1 건	1 건	2 건

II. 정책목표와 방향



III. 업무체계도

전략 목표	성과 목표	주요 사업	page
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 내실화	1-1.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유통질서 확립	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·점검	4
	1-2. 농가소득보호 및 신뢰 사회정착	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	6

임 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
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

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유통질서 확립

1.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·점검

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실태 여부를 지도·점검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

□ 사업목표

-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으로 인한 유통질서 확립 및 불안감 해소
-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유통질서 확립
- 농가소득보호와 소비자, 생산자, 영업자에 대한 신뢰구축

□ 추진방향

-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·점검 실시
- 민·관 합동 단속으로 지도·단속의 투명성 제고
- 소비자와 영업자 간의 신뢰구축으로 선진 음식문화 정착

□ 세부 추진계획

- 업종별 현황 (단위:개소/'08.12.31현재)

계	일반음식점	휴게음식점	위탁급식	집단급식소
7,382	6,216	844	96	226

- 지도·점검품목 및 대상 업소
 - 쇠고기, 돼지고기 및 닭고기 : 일반, 휴게, 위탁 및 집단급식소
 - 쌀·배추김치 : 영업장면적이 100㎡이상인 일반, 휴게 및 위탁급식소

- 단속 제도기간 운영 --- '08.12.22일 확대품목(돼지·닭고기)
 - 100㎡미만 음식점 : 3개월간('09.3.21일까지)
 - 33㎡이하 음식점 : 6개월간('09.6.21일까지)

○ 민·관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

- 기 간 : 연 중
- 편 성 : 2인 1조 6개반 (공무원6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6)

구 분	관 활동	구 분	관 활동
1권역	영등포본동, 영등포동	4권역	신길1,3,4,5,6,7동
2권역	당산1,2동, 문래동	5권역	양평1,2동
3권역	여의동	6권역	도림동, 대림1,2,3동

- 운영방법

- 전 지역 연 2회 이상 지도점검(20개소×6개조×120일)
- 시·구 합동지도점검 요청 시 수시점검
- 사회적 이슈 및 시민불편민원 접수 시 지도·점검
- 소홀하기 쉬운 원산지표시 품목(쌀, 배추, 육수 등) 지속적인 홍보

○ 점검내용(메뉴판이나 게시판 기재)

-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표시 및 사실 여부
- 원산지 증명서 훼손 또는 위·변조 행위
- 원산지가 기재된 증명서(도축검사증명서, 등급판정서), 거래명세서 등 보관 여부

○ 사후관리

- 사각지대 업소(호프, 실내포장마차, 외국인음식점) 별도 관리
- 신규업소 및 이전업소 신고 시 원산지표시제 홍보
- 미 이행업소 및 고질업소에 대한 특별점검반 운영(팀장 2명)

○ 처벌규정

-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최대 1월의 영업정지 처분 병과
-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: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○ 소요예산 : 50,400천원(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: 식품진흥기금)

농가소득보호 및 신뢰사회 정착

2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

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홍보를 강화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 시키고자 함

□ 사업목표

-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으로 신뢰사회구축
-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유통질서 확립

□ 추진방향

-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
-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예방 행정 구현
- 교육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

□ 세부 추진계획

- 대상업소 : 7,382개소(일반6,216, 휴게844, 위탁96, 집단226)
- 기 간 : 연 중
- 편 성 : 2인 1조 6개반 (공무원6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)
- 원산지표시 홍보 강화
 - 홍보내용
 - 역 주변, 백화점 등 다중집합장소에 원산지 홍보 캠페인(연 4회)
 - 표시이행 모범업소를 구 홈페이지,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이행유도
 - 동 주민 센터 홍보물 비치 및 직원홍보
 - 음식점 위생업소 교육 시 원산지표시 홍보(연 4회)

- 홍보방법

- 각 지역 현수막 설치, 책자, 전단지, 안내문 등 제작하여 우편발송
-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업소 방문 홍보

- 홍보물 제작

- 안내홍보용 책자

- 내 용 : 원산지 대상품목, 표시방법, 준수사항 처벌기준 등
- 용 도 : 지도 점검을 위한 업소 방문 시 홍보용(배포)
- 수 량 : 10,000부 제작 배포

- 안내책자(10,000부), 안내포스터(10,000부), 전단지(10,000장) 등

○ 지도점검반 교육

- 대 상 : 담당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(6명/월)
- 장 소 : 보건교육실
- 내 용 : 업소 방문 시 친절 및 원산지 지도점검 요령 및 준수사항 안내
- 방 법 : 자체 및 시(농산물품질관리원 요청) 교육(월1회)

○ 소요예산

- 홍보물 제작구입비(구비) : 7,640천원(홍보책자, 안내문 등)
-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: 50,400천원(식품진흥기금)

V. 2008 주요사업 추진실적

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·점검

□ 사업개요

- 대상업소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위탁급식영업소, 집단급식소
- 대상품목 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쌀·배추김치(100㎡이상 영업장)
- 점검내용 :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 기재 거래명세서 등 보관여부 등

□ 추진실적

-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·점검
 - 기간 : 2008. 7.10 ~ 12.31
 - 연인원 : 2인 1조 6개 반 1,276명(공무원 및 소비자위생감시원)
- 점검실적 (단위:개소)

대상업소	점검업소	점검결과		이행율
		이행업소	미이행업소	
7,332	15,113	13,627(누계)	1,486(누계)	90.1%

※ 서울시 전체 점검 실적 영등포구 1위(점검율 206%)

- 행정처분 : 6개 업소(영업정지 4, 시정명령 2)
- 서울시 합동 지도·점검 참여 1회(시4, 구4명)

2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·교육

□ 사업개요

- 대상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위탁급식영업소, 집단급식소
- 품목 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쌀·배추김치(100㎡이상 영업장)
- 내용 :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취지 및 표시방법, 미이행시 처벌 규정 등

□ 추진실적

- 구청장 공한문, 가이드북, 전단지, 포스터 등 7회 55,600매 배포
- 자체홍보물 제작 : 10,000부 제작 배포
- 원산지 표시 지도·점검 참여자 교육실시 및 참여 등 9회 실시